

화재보험과 손해사정

조 철 우 <본 협회 업무부 차장>

1. 화재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화재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각개인의 화재발생 위험을 계량하고 이에 따르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각출금을 분담하여 단체적인 경제준비를 마련하는 경제시설을 화재보험이라 한다.

화재보험의 보험상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업무는 보험계약 업무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바로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을 조사하고 보험금을 사정하여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이다.

손해사정인제도의 근거는 보험업법 제 204 조(손해사정)에서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보상의 원칙

화재보험의 보상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보상원칙

보상은 손해를 보완하되 손해난

만큼 보상한다. 만약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부분 이상의 보상이 된다면 부당한 치부행위가 됨은 물론이고 이것이 도덕위험과 결부될 때에는 모순이된다.

나. 잔존물 회수

화재 진행중에 있어서의 적절한 소방조치나 화재현장의 뒷처리에 있어서의 적시조치 및 이에 따르는 잔존물의 재생평가에 최선을 다해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다. 대위 원칙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이거나 또는 손해가 제 3자의 행위로 발생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3. 손해사정 업무의 절차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 업무처리를 위해 보험회사는

첫째, 보험의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상황을 파악한후 손해사정인 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을 조

사한 후 서식에 의거해 화재현장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결과 보험사고로 판명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친절히 보험금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구비서류 및 가지급보험제도를 설명한 후 응급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둘째, 보험사고를 손해사정인이 직접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신속히 제출토록 하며 사고의 성질,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법인(전문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한다. 이경우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완료를 독려하며 제출된 손해사정보고서를 검토해 보완하여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손해액 및 보험가액이 결정되고 원인조사가 끝나 손해액 사정업무가 완료되면 보험금지급 품의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사정한 후 손해사정인이 서명날인하여 보험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지급품의 하여야 한다.

4. 손해사정업무의 실제

가. 손해발생의 통지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상법 제 657조(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와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함) 10(손해의통지,

및 조사)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법에 대해선 약관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상법에서는 서면통지로 하여 서면 수령의 유무에 따른 분쟁을 피하게 하였다. 이에 따른 분실이행과 이행지 체에 대해선 상법상 규정근거가 없으나 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확인

(1) 청약서에 대한 검토

(가) 보험기간 확인

보험기간 만료후의 사고여부와 책임종료후의 연소피해에 대한 보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에 연소로 이재를 입고 만기후 계속 연소하였을 경우 손해발생 시점이 보험기간 만료전이므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재설이 통설로 손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고 있다.

(나) 보험명세와 배서사항 확인

보험목적의 건물구조와 면적, 직업 등을 확인하고 포괄계약여부, 당해 보험기간중의 기 발생 손해유무 확인, 잔존책임 보험가입 금액확인, 전기위험 담보여부, 확장위험 담보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보험료의 납입확인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 입금전에 생긴 사

고는 보상하지 않는 다'(상법 제 656조, 약관 2回)하여 보험료 선납제도를 체택하여 보험료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보험의 확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위에 있으나 아직은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피보험의 이익이라 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실질적 목적 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으로서 '피보험의 이익이 없으면 보험은 없다.'라고 할 만큼 보험계약의 불가결 요소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현장조사시에는 보험사고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해관계, 즉 피보험의 유무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4) 재보험사항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위험이 손해보상에 있다고 할 때에 피분산의 방법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재보험에 출재하는데 청약서상의 출재일자를 확인한 후 출재비율, 출재보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재보험배분표를 확인하여 재보험 사항을 검토, 이재규모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한다.

다. 현장조사 업무

(1) 보험약관상의 담보순례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한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간 생긴 화재, 소방손해 포함)를 보상한다.

즉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생긴 직접적인 손실, 고열과 간접적인 연기, 열기, 붕괴, 균열, 소방작업으로 인한 누수, 파괴,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화재 또는 소방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2) 원인의 조사

화재사고와 손해발생 원인과의 사이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에서 보상되는 보상사

고가 되며 이러한 손해원인은 보험보상책임 유무의 결정요소가 된다. 현재 보험자는 원인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수사권이 없으므로 손해원인은 사실상 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상의 원인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보상손해가 열거된 것이다. 보상하는 손해를 열거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그 사고의 발생 및 보상여부에 대한 거증책임이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거중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증명서작성도 피보험자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책에 따른 거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원인불명이라는 사실 만으로 면책 주장할 수 없다.

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보험자의 부담조건에 맞는 담보위험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담보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발생된 손해이어야 한다.

인과관계란 일정의 선행사실과 일정의 후행사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 관계다.

인과관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그 근거 및 한계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은 ① 근인설 ② 최유력조건설 ③ 상당인과 관

계설 ④ 자연선행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제조건 가운데에서 그 특정의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부합시켜 보아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을 가지고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당인과 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들면 보험의 목적물인 건물 및 가재에 담보위험인 화재의 발생으로 지붕의 일부가 소실되었을



때 폭우로 타다남은 건물 및 가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소실한 부분 뿐만 아니라 폭우로 입은 손해도 화재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화재에 의한 손해로 인정한다는 설이다.

마. 담보위험과 면책

보험에 있어서는 위험보편의 원칙에 의하여 담보위험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담보위험의 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험의 본질상 공서양속상 또는 보험기술상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1) 상법상의 면책사항

(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상법 제 659조 제 1항), 즉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등은 공서양속상 보험본질에 반대되기 때문에 면책으로 하고 있다.

(나) 전쟁이나 기타 반란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으면 보험금액을 징수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 660조)

전쟁이나 기타의 변란은 그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손해규모와 정도를 측정할 수 없고 대수의 법칙에 의한 보험기술로도 위험의 평균화가 곤란하여 요율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면책으로 하고 특약으로 인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 678조)

자연소모 등으로 인한 손해는 어떤 사고가 없어도 보험기간중 보통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이고 우연성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상법상의 면책사유외에 약관은

도난 또는 분실손해,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등 방사선손해(화재보험보통약관4) 등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다.

(3) 면책사항과 특약사항

공서양속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 실과 보험본질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보험목적의 하자나 자연소모 등은 특약으로도 확장담보할 수 없다. 이를 절대적 면책사유라고 한다. 반면 전쟁위험, 변란 등의 법적 면책 이외에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과 태풍, 홍수, 풍수해 등 자연이변과 소요, 노동쟁의, 도난 등 보험기술상 또는 보험가격상으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수가 곤란한 위험의 면책사유를 상대적 면책사유라 하여 이들 위험은 일정한 할증보험료를 받고 특약으로 확장담보한다.

바. 손해액의 조사업무

손해사정인의 업무는 손해액의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공정 타당한 사정결과가 얻어지는가의 여부는 면밀하고도 적절한 손해조사가 이루어지 는가에 있다.

손해사정은 엄정, 치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엄정, 치밀한 조사라 함은 형사나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같은 조사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상황과 규모 여하에 따라, 또는 피보험자와 기타 관계자에 따라서는 적극적 또

는 소극적으로 이들이 조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에 맞부딪칠 때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서도 사정담당자는 시종 냉정한 태도로써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집단적 행동이나 상대방의 강압에 굴복하여 「적당히」한다는 정도로 조사를 중지하거나 신중성이 결여된 조잡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 사정을 엄격히 한 나머지 손해를 당하여 정신적 안정성을 잃기 쉬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쾌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또한 피하여야 한다. 손해조사에 있어서 피보험자 또는 그 관련자로 하여금 손해조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사정인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면서 자기 조사를 진행하여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손해사정인은 신중성, 침착성, 공평성의 바탕아래 항상 언어동작에 세심하고 겸손하고도 솜씨있게 손해의 핵심을 잡는 요령을 스스로 창의와 연구 그리고 거듭되는 경험으로 터득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액의 평가

화재보험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즉 피보험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보험은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그 피보험의 익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이어야 하며 ②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득금지의 요청에 상응하는 공정을 기함이 필요하다. 이점때문에 법률과 약관에선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이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가액에 의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이며 결국 평가는 손해의 보상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의 규정이 있고 보상액 산정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효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이상적인 손해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의 보험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가액의 평가는 상법이나 약관에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있을 뿐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있지 않지만 보험의 목적을 계속사용재와 교환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재에는 건물, 기계, 장치, 영업용 집기, 비품류, 가재가 속하며 교환재에는 상품이 있다.

화재보험은 손해보상에 관한 원상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계속사용재이거나 교환재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재취득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